

세무회계저널
제8권 제4호 2007년 12월 pp.199~221
한국세무학회

연결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제도의 정비방안

- 기업체 회계담당자 · 분석가 · 회계사 · 대학교수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를 중심으로 -

김종대* · 신승묘** · 정재연***

<요 약>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 온 일련의 회계제도 개혁의 하나로서 2008년부터 초보적 단계에서의 연결공시 제도가 시행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에 한하여 2008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 시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미국, EU, 일본 등에서는 이미 연결공시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다. 연결공시제도는 기업의 경제적 실체에 대한 올바른 회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제적 정합성에도 부합한다는 장점 때문에 기업체 등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부분적으로 연결공시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연결공시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별 재무제표의 공시방법 및 범위의 결정, 분기·반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검토,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폐지, 그리고 기존 회계기준의 수정보완 등과 같이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기업체 회계담당자 · 분석가 · 회계사 및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결과를 토대로 연결공시제도의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연결재무제표, 연결공시제도, 중간보고서, 국제적 정합성, 회계정보 유용성

*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jdkim@chungbuk.ac.kr, 043-261-3155, 제1저자

**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smshin@inha.ac.kr, 032-860-7767, 교신저자

*** 강원대학교 경영관광회계학부 교수, jjjung@kangwon.ac.kr, 033-250-6177, 공동저자

I. 서 론

연결재무제표는 법률적 실체를 중심으로 작성되는 개별재무제표와는 달리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로 구성되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에 관한 재무정보를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이다. 연결회계는 경제적 실체의 개념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회계처리방법으로서 종속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경우(예컨대 지분을 50% 초과 등)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동일한 경제적 실체로 보고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은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서 공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일반목적 재무제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이나 일본회계기준에서는 개별재무제표의 공시를 허용하고 있기는 하나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고 있으며 중간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회계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004)」이라는 보고서에서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궁극적인 정책방향으로 정한 바 있으며, 2005년 3월 「증권거래법」 제83조의 3을 개정하여 2008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 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에 한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을 연결기준으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단계적으로 연결기준 공시대상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¹⁾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연구주제를 다룬 국내연구들은 많이 있으나,²⁾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연결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가 제시하는 정보 이외의 추가적인 정보효과를 지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결재무제표의 정보유용성을 평가한 것으로서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³⁾

다만 정규언(2003)은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를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로 전환하는 정책결정의 타당성을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향후 관계당국이 참고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규언(2003)의 연구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방법에만 의존함으로써

1)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 3 개정 전에는 상장기업과 등록기업(공개기업)의 경우에 한하여 연결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의 보충적 재무제표로서 공시하고 있을 뿐이었으며, 공개기업의 경우에도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는 없는 상황이었다.

2) 김권중·남상오(1994), 전성빈(1994), 황인태(1995), 김경호(1996), 김종대(2000), 김중대(2001), 김권중 등(2001), 신현걸·이만우(2002), 김권중·나인철(2002), 박성환(2002), 권수영·전영순(2003), 정규언(2003) 등의 연구가 있다.

3) 선행연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연결재무정보가 개별재무정보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들은 개별재무제표가 전달하지 못하는 유용한 정보를 연결재무제표가 제공함을 증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과가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정보유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나 비용이 수반된다면 제도의 시행은 타당성을 지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다소 미흡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다시 말하여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데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할 경우 응답자의 응답내용이 연구자가 마련한 설문지 상의 선택항목 범위내로 사전에 제한된다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연구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실제로는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이 논의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한계점도 지닌다.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 연결공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공시방법 및 범위의 결정, 분기·반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검토, 결합재무제표의 폐지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본 연구는 기업체 회계담당자·분석가·회계사 및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결과를 바탕으로 하여⁴⁾ 연결공시제도의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결공시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제도를 선도적으로 발전시켜온 미국의 현황과 연결재무제표 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과정을 겪어 온 일본의 현황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연결재무제표 제도의 현황을 제시한다. 제Ⅲ장에서는 연결공시제도의 도입경과 및 찬반양론을 정리하고, 제Ⅳ장에서는 회계정보와 관련한 주요 이해관계자(기업체, 분석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하여 연결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제Ⅴ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한다.

Ⅱ. 각국의 연결재무제표 제도

1. 미국의 연결재무제표 제도

미국에서는 철도회사인 Chicago and Northwestern Railway Corporation이 1881년에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철도회사의 특성상 여러 주에 100% 소유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관리하는 지주회사로서 경제적 실체를 반영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한 것이다. 1902년 US Steel Corporation(순수지주회사)에 의해 현대적 양식의 연결재무제표가 최초로 작성되었으며, 당시 회사는 이익과 자산 등을 연결기준으로 공시함으로써 충분한 배당가능이익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1917년에는 세무당국이 연결납세신고서를 요구하였고, 1919년에는 뉴욕증권거래소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촉진하는 법 개정을 단행하였으며,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일반화되었다. 1920년대 이후 미국의 연방정부가 Liberty Bond를 상환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여력이 증가

4) 심층면담의 대상과 주요 면담내용에 대하여는 IV장에 제시되어 있음.

되고 자본이 풍부해진 기업들의 사업 확장이 계속됨에 따라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촉진되어 지주회사제도가 발전하게 되었으며, 지주회사의 주주와 채권은행 등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1934년에는 증권거래법 제13조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 재무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을 규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1940년에는 SEC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형식 및 내용을 규정하는 Regulation S-X를 공포하여 연결재무제표의 형식과 내용의 통일을 추구함과 동시에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미국에서는 연결재무제표가 경제적 환경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발전하고 일반화되었으며, 1920년 경에 이르러 연결납세신고가 의무화되고 뉴욕증권거래소가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인정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1959년에 공포된 ARB 51은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회계기준으로서 연결회계의 통일적인 기준을 제공함과 동시에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서 확실히 규정하였으며, 그 후 연결회계에 관한 기준서를 지속적으로 제정함으로써 연결정보의 공시를 확대해 오고 있다.

2. 일본의 연결재무제표 제도

일본에서는 세계 제2차 대전 후 설립된 기업회계심의회(대장성)의 미래 프로젝트 주제의 하나로 연결재무제표를 채택한 바 있으며, 자회사를 통한 이익조작으로 인한 연쇄도산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1967년 기업회계심의회가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의견서」를 공포하였으나 기업과 감사업계의 반대로 도입을 유보하였다. 그러나 기업들이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는데 미국증권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하여 1961년 소니(SONY) 이후 1975년까지 약 40개의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국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였다. 기업집단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의 파악을 위한 연결회계의 필요성을 인정한 증권거래심의회가 1970년에 제출한 「기업내용공시제도 등의 정비개선에 관하여」란 보고서가 계기가 되어 1975년에 기업회계심의회가 「연결재무제표의 제도화에 관한 의견서」를 공포하였으며 그에 따라 1977년 결산부터 연결재무제표의 공시가 의무화되었다. 이 시점에서는 연결재무제표와 기타 관련 제도의 적용이 임의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그것은 후에 다음 <표 1>과 같이 변화하였다.

<표 1> 일본의 연결재무제표 관련 제도의 변천

항 목	연결공시의무화(1977년)	추후 변경내용 및 변경시점
연결재무제표의 위상	보충적 재무제표	주재무제표(2000년)
지분법적용	선택적용	강제적용(1983년)
이연법인세회계	임의적용	강제적용(1999년)
제출기한	결산 후 4개월	결산 후 3개월(1988년)

일본의 연결재무제표 주재무제표화는 회계빅뱅이라 불리는 회계혁명의 한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일본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채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 것은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이었다. 일본에서는 기업실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위하여 1997년 기업회계심의회가 「연결재무제표의 재인식에 관한 의견서」를 공표하였고, 그 결과 2000년 3월부터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가 의무화되었다. 일본에서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를 전후하여 발생한 주요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결재무제표 중심 공시(2000년) 전후의 변화내용

항 목	연결재무제표 중심 공시 이전	연결재무제표 중심 공시 이후
유가증권보고서 기재순서 및 내용	• (개별 → 연결)의 순서 • 개별재무제표에 기초한 경영 및 설비의 개황	• (연결 → 개별)의 순서 • 연결재무제표에 기초한 경영 및 설비의 개황
부외부채 정보 및 RISK 정보	개별기준으로 제공	연결기준으로 제공
현금흐름표	개별기준으로 작성	개별 및 연결기준으로 작성
중간재무제표	반기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함	반기 연결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함
중요한 사건에 대한 임시보고서	개별기준으로 작성	연결기준으로 작성
지주회사	순수지주회사가 허용되지 않음	순수지주회사의 허용 및 제도정비
비연결 자회사 및 관계회사	지분법적용을 의무화하지 않음	지분법손익을 주기하도록 함

일본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가 다음과 같은 경제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첫째,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대차대조표 정보, risk 정보 및 현금흐름정보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경영설비의 개황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연결중심의 공시기반이 구축되었다. 둘째, 연결범위와 지분법 적용범위가 지분을 기준에서 지배력(영향력)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분을 변경에 의한 자의적인 이익정보 조작여지가 감소되었다. 셋째, 이전에는 자회사의 대차대조표를 장부가액으로 연결하였으나, 자회사의 대차대조표를 시가평가한 후 모회사의 대차대조표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자회사의 자본연결방식이 변경되었다. 넷째, 연결현금흐름계산서를 도입함으로써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기업경영과 연결기준 기업가치의 평가를 촉진하게 되었다.

2000년 3월 결산기부터 최초로 적용했던 일본의 신연결회계 제도는 공개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사실상 공개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연결결산 일정을 크게 앞당겨야 했으며 연결범위도 모회사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던 종래의 ‘지분율기준’에서 ‘실질지배력기준’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신연결회계 제도의 적용이 법적인

로 의무화된 것은 공개기업뿐이었지만 연결기업 그룹 내의 다른 기업도 당연히 회계정책을 연결주체와 통일시켜야 했다. 대기업에게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세효과회계(우리나라의 이연법인세회계) 등을 연결대상 중소기업도 적용해야 하는 등 회계기준 변경이 불가피했다. 2004년 3월말 현재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월말 결산회사(일본은 3월말 결산회사가 대부분임) 중 연결결산을 발표하는 회사는 1599개사에 이르며, 동경증권거래소 상장부 통계에 따르면 이들 회사들이 연결결산자료를 발표하기까지는 평균 44.8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3월말 결산회사 대부분이 5월 중순경에 연결결산을 공표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도입된 2000년 3월기에는 평균적으로 53.9일 소요됐으나 이후 매년 단축된 결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된 모습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감사 받은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적시성 있는 정보의 공시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본은 신연결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 공시제도(Disclosure System)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외 광범위한 투자자가 일본 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주세운 2004).

3. 우리나라의 연결재무제표 제도

가. 연결재무제표 제도의 연혁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그 이후 1985년에 「연결재무제표기준」을 제정하였고, 1987년에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준칙」을 제정하였다. 1992년 「증권거래법」시행규칙에서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연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첨부을 의무화하였으며, 1993년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를 기존의 상장법인에서 외감법 대상법인으로 확대하였다. 1998년에는 「연결재무제표기준」과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준칙」을 통합하여 「연결재무제표준칙」을 제정하였으며, 2000년에는 「연결재무제표준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한편 종전에는 「증권거래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시 개별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서 공시하고 연결재무제표는 보충적 재무제표로서 공시하도록 하였으나, 2005년 3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 3을 개정하여 2008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 시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연결공시제도가 도입되었다.

개정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 3에 의하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그 법인의 개별재무제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및 그 법인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법인은 그 법인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를 기재하고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연도의 종료 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결공시 제도의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연결공시제도의 시행에 따른 변화내용

항 목	종전의 사업보고서 제도	연결공시제도
주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는 보조재무제표로 기재)
연결재무제표 공시시기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연결기준 손익변동원인	파악 불능	파악 가능(사업보고서 보완)
연결기준 사업부문별 재무정보	파악 불능	파악 가능(사업보고서 보완)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7.9.10)

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제도의 연혁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4월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의견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1993년 12월 「외감법」을 개정하여 1994년 12월 결산법인부터는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였다.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지배회사는 「외감법」 제13조 및 「기업회계기준」 제6조에 의거하여 「연결재무제표준칙」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연결작성 및 지분법 적용은 1995년 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지배·종속 관계에 해당하는 모든 국내외 주식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되었다.

한편 2000년 7월 「외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분율 기준에서 이사회·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등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등도 지배·종속관계로 규정하여 연결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지배·종속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형태와 관계없이 연결종속회사로 포함하며,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종속회사로 인정하므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업종이 각각 비금융업과 금융업이거나 그 반대인 경우에도 연결범위에 포함하였다. 또한 종전에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결자회사에서 제외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신설회사의 설립 시 납입자본금이 7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연결자회사에 포함하였다.

III. 연결공시제도의 도입경과 및 찬반의견

1. 연결공시제도의 도입경과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3-20호(연결재무제표)에서⁵⁾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를 전제로 기존의 연결재무제표준칙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학계에서도 국제적 정합성과 연결재무제표의 실증적 유용성 등을 근거로 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감독원은 연결공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도입방안을 설정하였다. 첫째, 당분간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 공시의무를 유지하되 「증권거래법」 시행령상의 예외규정(개별재무제표 제출 30일 이후 연결재무제표 제출)을 폐지하여 공개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와 동시에 공시하도록 하고, 연결재무정보 공시의무를 분기·반기까지 확대하여 분기·반기보고서 제출 시에도 연결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와 함께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는 지배회사에 대해서는 개별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하고 개별재무정보를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흡수하며, 공개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공시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는 단계에서 대상기업을 외감법 적용대상법인으로 확대한다.

금감위는 「회계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004)」이라는 보고서에서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에 위배되고 종속회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시하지 못하여 투자자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2005년 3월에 관련법령인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 3을 개정함으로써,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를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하되 회계인프라·인력 등 연결재무제표 작성능력이 갖추어진 기업부터 우선 실시하도록 하였다.⁶⁾

그리하여 우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에 한하여 2008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 시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수는 100개에 이르며 이는 2006년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법인의 총수인 2,010개의 5% 정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들 중 상장·코스닥법인은 86개사이며 제조업은 64개사에 해당한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고,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 중 상위 10개사의 현황은 다음 <표 5>와 같다.

5)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3-20호(연결재무제표)는 2007년 1월에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연결재무제표)로 공포되었다.

6)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공인회계사를 상근 인력으로 채용하고 있는 상장회사는 2003년 현재 전체의 15%에 불과하였다.

〈표 4〉 2006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의 현황

구 분	상장·코스닥 법인	기 타 ¹⁾	합 계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A)	1,688사 ²⁾	322사	2,010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 (B)	86사	14사	100사
· 금융업	23사	13사	36사
· 제조업	63사	1사	64사

주1) 기타 법인은 금감위 등록법인으로서 주주의 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 등으로 구성됨

주2) 2006년 12월 31일 현재 주권상장·코스닥법인 1,694사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 6개사를 제외함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7.9.10)

〈표 5〉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 중 상위 10개사 현황(2006년도)

(단위 : 조원)

상장·코스닥 법인		기타법인	
회 사 명	자산총액	회 사 명	자산총액
국민은행	195.2	우리은행	166.4
중소기업은행	103.4	신한은행	154.2
한국의환은행	69.4	하나은행	110.9
한국전력공사	63.5	삼성생명보험	99.6
삼성전자	57.8	한국SC제일은행	56.8
현대자동차	26.4	한국씨티은행	48.2
포스코	26.3	교보생명보험	38.5
대구은행	21.9	경남은행	16.5
부산은행	21.7	광주은행	13.9
SK	19.6	동양생명보험	5.7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7.9.10)

한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하여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있어서 사업보고서 전체내용을 연결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고, 2013년부터는 분기·반기보고서 역시 모든 상장기업에 있어서 연결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연결공시제도의 단계별 도입시기를 요약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연결공시제도의 단계별 도입시기

구 분	적용시기	국제회계기준	연결기준 공시	
			사업보고서	분 · 반기보고서
현재	2008년	미도입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 (재무사항 등에 한정)	—
1단계	2009년	적용희망기업 (금융회사 제외)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 (금융회사 제외)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 (금융회사 제외)
2단계	2011년	모든 상장기업	모든 상장기업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
3단계	2013년	모든 상장기업	모든 상장기업	모든 상장기업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7.9.10)

2. 연결공시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

연결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찬반의견이 제시되었다. 연결공시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이해관계자는 주로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정책당국 · 회계기준원 및 학자들이었으며, 연결공시제도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회계정보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결공시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⁷⁾

첫째,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는 투자자로 하여금 종속회사의 잠재적 부실 등을 간과하도록 하는 등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현저하게 약화시켜 투자자보호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에 비해 경제적 실체에 관해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일반목적 재무제표로서 우월하다.

둘째, 다수의 종속회사를 가진 지배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가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연결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보다 1개월 늦게 공시됨으로써 정보의 불균형상태가 발생한다.

셋째, 공개기업의 분기 · 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일부 외국투자자의 경우 연말재무제표의 차이발생을 회계오류로 인식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개별재무제표상의 지분법이익이 연결이익과 일치한다 하더라도 투자자의사결정 및 기업가치 평가에 연결기준의 자산 · 부채 및 순자산과 손익의 구조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며, 특히 지배회사의 채권자에게는 채권의 담보력 · 회수위험 및 신용상태 등을 판단하기 위해 내부거래를 포함한 개별재무제표 정보보다는 이들이 제거된 연결실체 전체의 자산과 부채 정보가 더 유용하다.

7) 이하 찬반의견은 금융감독원의 회계제도 개혁방안(2002), 회계선진화 방안(2003), 한국회계연구원의 연결재무제표 주요논점(2003) 및 정규연(2003) 등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다섯째, 이미 지분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연결공시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 비용보다는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와 회계투명성 제고 및 국제적 정합성 등으로 인한 추가적 효익이 더 클 것이다.

한편 기업체를 중심으로 연결공시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주장들도 있었는데 그에 대한 몇 가지 대표적인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투자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하여 이미 지분법이 적용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연결공시제도는 추가적 실익이 그다지 많지 않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들의 회계시스템 및 회계능력에 비추어 볼 때 연결공시제도의 도입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이다.

셋째, 연결재무제표를 현재보다 30일 앞당겨 공시하기 위해서는 연결자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그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는데, 규모가 작은 연결대상 자회사의 경우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또한 해외 연결종속회사의 경우에는 현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우리나라 회계기준과의 차이를 조정하여야 하므로 공시시점을 앞당기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다.

넷째,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이 연결자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소형공개기업 및 비공개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 작업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IV. 연결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제도의 정비방안

III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3월부터 연결공시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2007년 중에 사업보고서의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의견 등이 연결기준으로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서식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연결손익의 주된 변동원인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연결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부문별 매출액·영업손익 및 자산총액 등의 재무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연결실체의 사업부문별 재무정보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처럼 연결공시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사업보고서 서식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이외에도 개별재무제표의 공시방법 및 범위, 분기·반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검토, 지배회사 배당가능이익의 계산과 공시방법,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폐지, 그리고 기존 회계기준의 수정 및 보완 등 관련 규정 및 제도에 대한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결중심 공시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연결중심 공시제도의 도입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이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즉 기업체 회계담당자 13명, 분석가 20명, 회계사 13명 및 교수 8명 등 총 54명을 대상으로 하여⁸⁾ 연결중심 공시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행 규정 및 제도상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제공받았다. 아울러 예시로서 제공된 것은 아니더라도 기타 자유주제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심층면담 결과 얻은 의견을 토대로 연결중심 공시제도의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의 공시방법 및 범위

연결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의 별도 공시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정규언(2003)의 연구에서는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를 별도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별정보를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결과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를 보조적 재무제표로서 별도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는 응답자 중 분석가의 절대 다수가 상기 의견을 제시함에 따른 결과이며 분석가의 응답을 제외하면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의 주석 또는 부속명세서 형태로 공시하자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분석가들은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를 공시하지 않는 방안에 대하여 강한 반대의 입장을 보였으며 일부 분석가는 연결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시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였다. 만일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정보의 공시를 면제한다 하더라도 시계열 분석 목적상 최소한 3년 정도는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가 함께 공시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가급적 기업의 재무정보가 많이 공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분석가들은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의 별도공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전체 응답자들의 견해를 종합할 때 연결공시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주석 또는 부속명세서 형태로 함께 공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재무사항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개별재무제표 정보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회계정보 작성과 관련한 비용부담이 줄어든다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이외에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이용자들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결공시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현행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사업보고서 등 공시의무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8) 기업체의 경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과 아닌 기업이 반반 정도였고 소수의 은행 및 서비스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제조업에 속하였으며, 면담대상은 연결재무제표 작성담당 팀장 혹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가는 증권회사의 재무분석가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분석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회계감사인인 대형법인(big 4)과 소형법인의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교수를 포함한 모든 면담대상은 대체로 7년에서 20년 정도 회계분야에 종사하였으며, 대부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감사 또는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의견이 일부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와는 별도로 공시할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를 모두 공시하여야 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정보공시로 인한 비용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시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점들을 종합하건대 연결재무제표와 함께 개별재무제표를 공시하되 개별재무제표에 기초한 기타 재무정보의 공시는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비용-효익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분기·반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검토

우리나라는 현재 모든 공개기업에 대해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반기보고서의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분기보고서의 검토가 의무화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는 2001년 7월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공개기업에 대하여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분기검토를 의무화하였으며, 2004년 4월에 분기검토 대상을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공개기업으로 확대한 후, 2005년 3월에는(시행시기는 1년 유예함)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공개기업으로 다시 확대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연계된 단계별 연결공시제도 도입계획에 의하면 분기·반기보고서에 대한 연결공시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2009년부터 국제회계기준 적용 희망기업(금융회사 제외), 2011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 2013년부터 모든 공개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⁹⁾

정규언의 연구(2003)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는 경우 공개기업은 반기와 분기보고서의 공시도 연결재무제표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교수는 다소 찬성, 공인회계사는 중립, 그리고 기업임직원은 다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에 본 연구의 심층면담결과에서는 반기와 분기에 연결재무제표를 모두 공시하도록 한다는 의견에 분석가, 공인회계사 및 교수는 찬성하였으나 기업체는 현행과 같이 기말에만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는 방안과 우선 기말에만 적용하고 반기와 분기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에 비슷한 찬성률을 보였다. 공인회계사들은 반기와 분기 연결보고서의 공시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면 반기보고서는 기말보고서에 대한 연결중심공시 실시 후 1년 정도 후에 실시하고 분기보고서는 기말보고서에 대한 연결중심공시 실시 후 1~2년 정도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업체 회계담당자, 분석가 및 교수의 경우에는 반기보고서는 3년 이후, 분기보고서는 5년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연결공시제도의 시작과 동시에 반기와 분기까지 연결기준으로 공시하도록 할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체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감안할 때 연결기준 공시를 반기와 분기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은 비용-효익 측면에서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일 수도 있다.

9)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모든 공개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분기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반기와 분기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로 공시하고 기말에만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공시하게 됨으로써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저해하고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업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연결공시제도의 시작과 동시에 반기와 분기까지 연결기준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비용-효익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컨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공개기업은 분기와 반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므로 2008년 연결공시제도의 시작과 동시에 분기와 반기에 대해서도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연결자회사의 분기·반기재무제표의 검토의무가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현재 정책당국에서 추진 중인 분기검토 대상의 단계적 확대방안과 별개로 연결공시제도가 적용되는 지배회사의 연결자회사는 기업공개 여부 및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분기 및 반기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함께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 3을 추가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분기와 반기에 연결기준으로 공시할 경우 외부감사인의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현행 45일 이내의 공시기한을 다소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점들을 종합하건대 분기 및 반기에도 연결기준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보다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기말보고서와 중간보고서의 비교가능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에 이럴 경우 규모가 작은 기업은 회계정보 작성과 관련하여 과중한 업무부담을 하게 되는 반면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장기적으로는 분기 및 반기에도 연결기준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되 소형 공개기업의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비용-효익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분기 및 반기에 대한 연결기준 공시 의무화는 분기 및 반기 개별재무제표의 검토의무화 정책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므로 서로 연계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위에서 논의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견해와 면담결과에서 나타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비교하여 요약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금융감독당국의 견해와 면담결과 등의 비교

주 제	금융감독당국	면담결과 등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의 공시방법 및 범위	• 단기 : 개별재무제표 공시 • 장기 : 개별재무제표 작성면제, 개별재무정보를 주석으로 공시	• 개별재무제표를 주석 또는 부속명세서의 형태로 공시
분기·반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검토	• 2008년 : 작성하지 않음 • 2009년 : 국제회계기준 적용 희망기업 • 2011년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 • 2013년 : 모든 공개기업	• 회계사 : 연결공시 시행 후 반기는 1년, 분기는 1~2년 후 작성 • 기타 이해관계자 : 연결공시 시행 후 반기는 3년, 분기는 5년 후 순 차 작성 • 연구자 : 연결공시 시행과 동시에 반기·분기 동시 작성

3. 지배회사 배당가능이익의 계산과 공시방법

현재 상법 및 기타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은 법적 실체인 지배기업의 개별이익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개별재무제표에서도 지분법적용에 따른 지분법이익이 법적인 실체인 지배회사의 이익이 아니므로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아직 공론화되지 않았다.

연결공시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재 지분법이익을 포함한 개별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과 금액이 같은(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결당기순이익이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도 지분법이익이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를 도입할 경우 연결이익을 기초로 한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연결공시제도 도입을 계기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2000년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전환되었지만 배당가능이익은 여전히 개별이익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연결당기순이익이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개념적 문제가 발생하지만 지주회사제도가 정착된 미국은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연결공시의 기준이 지분을 50% 이상이고 실제로 지분율이 아주 높은 종속회사가 많으므로 배당으로 인한 이론적·실질적인 문제가 적은 편이며, 또한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상장된 경우가 없으므로 연결자회사의 배당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문제가 적은 편에 속한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결과 지배회사 배당가능이익의 계산과 공시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응답자들의 견해가 매우 다양하여 어느 정도 일관된 견해를 이끌어 내기가 곤란하였다. 즉 지분법이익이나 연결이익 중 자회사 이익부분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모두 있었으며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¹⁰⁾

이처럼 배당가능이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배당가능이익의 계산방법은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며 회계기준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실체로 볼 수 있는 연결실체에 포함되는 지배회사와 자회사가 법적으로는 별개의 실체인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지배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의 계산과 공시문제를 합리적으로 매듭지음으로써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불일치 문제 해소 및 투자자보호 등의 측면에서 현실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을 비롯한 관계법규에서의 보완을 필요로 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따라서 향후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10) 응답자들은 개별이익과 연결이익을 비교하여 응답할 경우 개별이익에는 지분법이익이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응답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4.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제도의 폐지

1998년 10월 21일에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준칙」이 제정되었으며, 「외감법」 개정을 통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이 공동운명체로서 한 계열회사의 부실은 기업집단 전체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연결공시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폐지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결과 결합재무제표 정보는 정부정책 및 규제의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을 뿐 정보이용자들의 실제 활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결공시제도가 시행된다면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의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분석가를 제외한 기업체 회계담당자, 공인회계사 및 교수 등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대체로 결합재무제표가 최초 도입시기와는 달리 연결공시 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는 그 필요성이나 효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기업체의 입장에서 비용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이었으며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대표적인 응답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합재무제표의 추가적 유용성이 극히 미미하다. 둘째, 과거에는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을 위하여 기업들이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받아 들였으나, 지금은 상당수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그 유용성이 현저하게 하락하였다. 더욱이 기업집단의 해체가 진행되어 결합재무제표의 정보유용성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셋째,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가 도입될 경우 결합재무제표는 순효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 넷째,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져 결합재무제표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결합재무제표는 회계실체의 개념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요컨대 대부분의 응답자들의 견해에 입각할 때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지주회사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연결재무제표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집단의 재무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를 폐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정보이용자의 효익의 감소는 거의 없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인 반면 기업체가 부담하는 정보공시 비용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비용-효익 측면에서 연결공시제도를 도입함과 함께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기존 회계기준의 수정 및 보완

연결공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의 기업회계기준 및 준칙과 기업회계기준서 일부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심층면담 결과 제시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¹¹⁾

11) 심층면담의 마지막 부분에서 연결중심 공시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현행 기업회계기준상의 개정 또는

가. 연결대상회사의 범위

연결대상회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연결재무제표) 문단 5의 (2)에서는 “연결 실체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실체를 말한다. 다만 외감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배·종속관계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지배·종속회사로 이루어진 실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 결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연결대상회사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실무상 불편함과 혼동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연결대상회사의 범위를 감안하여 비용-효익 관점에서 연결절차나 방법을 유기적으로 규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연결대상회사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에서 총체적으로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실질지배력 기준에 의한 연결대상 회사의 범위에 대한 상세한 예시를 나열하고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예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체의 입장에서 연결대상회사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 연결재무제표가 연결실체를 보다 잘 반영하도록 하는 데 유익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종속회사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 문단8-29에 의하면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연결재무제표) 문단31에 의하면 연결실체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더라도 개별재무제표를 계속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현행규정이 계속 필요할 것이나, 만약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함에 따라 개별재무제표 공시가 면제된다면 연결대상 종속회사 지분증권에 대하여 지분법 평가를 강제화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체 입장에서 종속회사 지분증권에 대하여 지분법 평가를 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임과 아울러 연결재무제표의 보고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의 수행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이 다른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연결재무제표) 문단23에서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제공받았다. 아울러 예시로서 제공된 것은 아니더라도 기타 자유주제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였다. 기존 회계기준의 수정 및 보완과 관련하여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은 이와 같은 응답자들의 제의의견 및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건에 대하여는 종속회사의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방법을 지배회사의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방법과 일치하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연결실체 내 모든 회사가 중소기업특례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이며 당해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방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부 특수한 상황 하에서만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사이에 상이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배회사의 회계정책이 종속회사의 거래나 사건에 명백히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회계처리를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각자의 거래상황이나 사건에 적합한 회계처리를 보다 융통성 있게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지배회사의 회계정책이 종속회사의 회계정책에 명백히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상세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연결재무제표) 문단23의 규정에 따라 종속회사의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방법을 지배회사의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방법과 일치하도록 적절히 수정하기 위해서는 종속회사의 입장에서 회계변경을 해야 하는데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서는 이러한 회계변경을 위한 근거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속회사의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을 지배회사의 그것으로 일치시키는 회계변경을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결산일이 다른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연결재무제표) 문단21-22에 의하면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의 대차대조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종속회사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종속회사의 대차대조표일과 지배회사의 대차대조표일의 차이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종속회사의 대차대조표일에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지배회사의 대차대조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종속회사의 검토받은 분기 또는 반기 재무제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속회사의 재무제표가 지배회사의 대차대조표일 현재와 종속회사의 대차대조표일 현재 사이에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배회사의 대차대조표일 현재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연결재무제표의 보고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의 수행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 중소기업특례의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14호(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6에서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연결대상범위에

속하는 종속회사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결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개별재무제표의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지분법의 강제적용이 불필요하므로 상기 예외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서 사이에 상호 일관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불필요한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발생하는 기업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은 가급적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중 어느 하나의 회사라도 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배회사와 연결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종속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한 후의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각 재무제표를 토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규정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바. 보고실체의 변경에 관한 회계기준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서는 보고실체의 변경이 회계변경의 하나로 나열되어 있지 않다. 또한 어떤 회계기준에서도 보고실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재무회계개념체계의 문단 62에서 “지배회사와 모든 종속회사는 연결재무보고의 기업실체가 된다.”는 문구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전환되면 연결실체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며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서 연결실체를 포함한 보고실체의 변경을 회계변경의 한 유형으로서 추가하고 이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기업실체, 회계실체, 보고실체, 연결실체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향후 연결중심 공시제도가 보편화되었을 때 흔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변경이 중요한 회계처리문제가 됨을 명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결실체의 개념과 기업실체, 회계실체 및 보고실체 등에 대한 개념을 상호간에 구분함으로써 연결중심 공시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개념이라 할 수 있는 연결실체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를 통하여 연결중심 공시제도의 개념 및 취지도 보다 명확히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V. 결 론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로 구성되는 경제적 실체의 재무정보를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이다. 연결회계는 경제적 실체의 개념에 보다 부응하는 회계처리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오래 전부터 시장의 요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서 정착되었다. 그리고 일본 역시 경제의 글로벌화와 국제회계기준의 정합성 추구를 위하여 2000년부터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세

계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결공시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연결기준 공시대상기업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연결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정보가 제공하는 정보 이외의 추가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실증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나, 이러한 결과가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연결재무제표의 정보유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나 비용이 수반된다면 연결공시제도의 시행은 타당성을 지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부분적으로 연결공시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다 완전한 연결공시제도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관련 규정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결공시제도의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결공시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업체 회계담당자·분석가·회계사 및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얻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공시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현행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사업보고서 등 공시의무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중부담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보공시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별재무제표에 기초한 기타 재무정보의 공시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모든 재무정보는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공시하되 지배회사의 개별 재무정보는 주식 또는 부속명세서 형태로 함께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만일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정보의 공시를 면제한다 하더라도 시계열 분석 목적상 최소한 3년 정도는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가 함께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공개기업은 분기와 반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2008년 연결공시제도의 시작과 동시에 분기와 반기에 대해서도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연결자회사의 분기·반기 재무제표의 검토의무가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현재 정책당국에서 추진 중인 분기검토 대상의 단계적 확대방안과 별개로 연결공시제도가 적용되는 지배회사의 연결자회사는 공개 여부 및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분기 및 반기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함께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 3을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기와 반기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현행 45일 이내의 공시기한을 다소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지배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지주회사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연결재무제표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집단의 재무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를 도입함과 함께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가 실행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기업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서 중 일부에서 수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연결대상회사의 범위, 종속회사 투자자식의 평가방법,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중소기업

특례의 적용 등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본 연구의 심층면담결과 연결공시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된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공시제도가 도입되면 분기·반기 및 기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 또는 감사받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회계정보를 적시에 산출하고 공시하기 위한 회계시스템의 구축(예컨대 ERP시스템의 도입)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을 이해하고 연결회계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전문가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업은 연결회계를 전담할 회계전문가를 채용하고 정책당국은 기업이 연결회계정보의 산출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결공시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결지배회사의 입장에서 절차상의 문제나 비용문제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연결지배회사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연결지배회사가 연결자회사의 재무제표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을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증권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면 이러한 재무정보의 공시위험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이러한 위험을 경감해 줄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연결지배회사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연결자회사의 통제와 회계지도 및 감독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연결지배회사의 회계시스템이 연결자회사에 전파되고 상호 견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연결지배회사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도 감사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결자회사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단순히 타 감사인의 감사결과를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 및 감사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위험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대처는 궁극적으로 연결실체(연결지배회사 및 연결자회사 전체를 말함)를 동일한 외부감사인이 감사하게 하는 유인이 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기업체 회계담당자·분석가·회계사 및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결공시제도의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결공시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되는데 일조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결중심 공시제도의 개념 및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충분한 사전지식이 있음으로써 심층면담의 목적과 세부 내용을 잘 이해하는 자를 심층면담 대상자로 하고자 한 결과 보다 다양한 회계정보이용자를 심층면담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즉 회계정보이용자로서는 분석가만을 포함하였을 뿐 그 이외의 불특정 다수의 회계정보이용자를 심층면담 대상자로 하지 못하였다. 또한 연결중심 공시제도의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가급적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려 한 결과 심층면담 결과를 통하여 파악된 내용에 국한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2002. “회계제도 개혁방안”.
- _____. 2003. “회계 선진화 방안”.
- _____. 2007. “연결공시제도의 본격시행”. 보도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2004. “회계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 권수영 · 전영순. 2003.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 회계제도의 구축방안”. 금융감독원 IBRD 무상자금 지원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 김권중 · 남상오, 1994. “연결회계정책 정립을 위한 실증적 연구”, 회계학연구 제18호 : 19-45.
- 김권중 · 나인철 · 권해숙. 2001.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회계제도 발전방안”. 금융감독원 IBRD 무상자금 지원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 _____. 2002. “지분법회계와 연결재무제표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회계학연구 제27권 제4호 : 115-144.
- 김경호. 1996. “연결재무제표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 : 19-47.
- 김종대. 2000. “연결재무제표 공시와 역기업규모 현상”. 경영학연구 제29권 제2호 : 85-108.
- _____. 2001. “연결재무구조와 체계적 위험간의 상관관계분석 - 연결정책수립을 위한 실증연구”. 경영학연구 제30권 제3호 : 855-876.
- 박성환. 2002. “지분법 도입후 연결재무제표의 정보효과”. 회계연구 제7권 제2호 : 1-18.
- 신현걸 · 이만우. 2002. “지분법 적용 시 연결재무제표 정보의 유용성”. 세무와회계저널 제3권 제1호 : 67-91.
- 전성빈. 1994. “감사받은 연결재무제표의 정보효과”, 회계학연구 제19호 : 51-71.
- 정규언. 2003.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및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상장협 연구보고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주세운. 2004. “일본의 연결재무제표”, 매경이코노미.
- 한국회계연구원. 2003.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3-20호(연결재무제표)”.
- _____. 2004a.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3-20호(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
- _____. 2004b.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4-27호(사업결합 제1단계)에 대한 검토의견”.
- 황인태. 1995.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거래량 정보를 이용하여”. 회계학연구 제20권 제2호 : 59-75.
- 伊藤邦雄, 中條祐介, 2002, 連結會計 と グループ經營, 中央經濟社.

Suggested Supplementations and Amendments of Accounting Standards for Introduc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Jong-Dae Kim* · Seung-Myo Shin** · Jae-Yeon Jeong***

〈Abstract〉

As one of the accounting reforms, financial reporting on consolidated basis will become mandatory from 2008. More specifically, Korean firms with total assets over ₩2 trillion are required to present their financial statements on the consolidated basis from the first quarter of 2008. Financial reporting on the consolidated basis has already been mandatory in the US, Japan and EU. Not without objections by some stakeholders including industry,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ing will replace individual financial reporting eventually, because 1) it enhances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by providing more accurate information on the economic entity, and 2) it conforms to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n order for the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ing to be adopted in its entirety, some issues are to be addressed and resolved ; that is, determination of the scope of disclosure of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preparation and review of quarterly and semi-annual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bolition of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and amendment and supplementation of the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As an effort to provide solution to the issues, this paper provides discussions and suggestions based on the in-depth interviews with accountants, financial analysts, CPAs and academicians.

<Key word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ing, Interim Reports,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Inha University.

***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